구한말 한반도 주변정세와 한국의 외교(요약)

1. 보고 개요

o 이 보고서는 개항이후 한일병합에 이르기까지 주변 열강의 각축과 침탈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 외교의 전개과정과 그 파급효과를 대일·대서구 수교, 대청 자주외교 및 대일 국권수호 외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 검토한 자료입니다

o 이 보고서 작성에는 국내외 학자들의 관련 논문·저서를 참조하였습니다

2. 보고 요지

□ 전통적 동아시아질서의 붕괴와 한국의 대외개방·수교외교

o 중화론적 국제질서관을 고수해온 조선의 지배층내에 이양선의 출몰과 병인양요 등을 거치면서 국제적 안목을 넓히며 점차 대외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

- 조선 정부는 운양호사건이후 박규수 등 개화파의 영향과 청의 권고를 수용하여 일본과 근대적 조약(강화도조약)을 체결하게 됨

o 전통적인 '事大字小의 禮' 명분하에 조선은 외교와 내정에서 자주성을 유지해왔으나, 1880년대초 일본 및 러시아의 진출을 견제하려는 청의 정책변화로 간섭을 받게 됨

- '親중국·結일본·聯미국'을 주장하는『조선책략』의 영향하에, 조선은 미국 등 구미 국가와의 수호 조약을 체결하면서, 국제사회에 하나의 자주독립국임을 주지시켜나감

- 근대적 국제관계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'통리기무아문'이 신설되었으며(1881년), 고종은 서양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대외개방과 부국강병을 추진하겠다는 교서를 발표함

□ 청의 간섭 증대와 한국의 자주외교

o 임오군란(1882년)의 사후처리 과정에서, 청은 종주권을 내세워 외교 및 재정고문을 파견하는 등 간섭과 경제적 진출을 심화시킴

o 임오군란의 사죄사절로 방일한 박영효, 김옥균 등 개화파는 도쿄주재 각국 외교관과 접촉하면서 조선이 청의 속국이 아니라 자주독립국임을 설명하는 외교 활동을 전개함

- 개화파는 청의 속국화 정책에 반발, 친청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갑신정변을 단행(1884.12)하여 조청간 종속관계를 부인하려는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했으나 실패함

o 갑신정변의 실패이후 청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, 고종은 서구열강을 활용하여 청을 견제하려는 일종의 세력균형(均勢) 외교를 전개함

- 1884.11 권동수·김용원 밀사의 파견 등을 통해 조선은 러시아의 보호와 군대 파견을 요청하였으나, 러시아의 무반응과 청·일의 반대에 직면하였으며 고종 폐위까지 거론됨
-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려는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대응, 조선은 각국 공관에 조회문을 보내는 등 영국에 철수 압박 외교를 적극 전개함
- 대러 접근이 실패한 후, 고종은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인정받기 위해 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양을 주미공사로 파견하였으며(1887.8), 청의 의전절차 준수 요구를 거절함

□ 청·일·러의 각축과 한국의 자주독립외교

o 동학농민군 봉기로 위기에 처한 조선이 청에 구원병을 요청한 것(1894.6)을 계기로 조선에 출병한 청·일군의 조속한 철수를 위해, 조선은 미국 등 서구 열강에 중재를 요청함

- 개전구실 확보를 위해 일본이 청·한종주권의 단절을 요구하자, 조선 정부는 처음부터 자주국으로서 내정과 외교에서 독립되었다고 밝히는 등 일본의 간섭을 배제코자 노력함
- 갑오개혁시기 외무아문의 신설 등 근대적 외교제도로의 개편이 이루어졌으며, 국내외에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선포함

o 청일전쟁이후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, 고종은 주한러시아공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고(아관파천), 니콜라이 II세 대관식에 민영환을 파견하여 조러간 동맹을 제의함
- 자주독립을 보장받기 위해 대한제국은 미·일·러에 한반도 중립화를 제의하였으며,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 상주사절을 파견하는 등 국제적 지지와 협력 획득을 시도함

o 러일전쟁이 임박하자 고종은 국외중립을 선언하였으며(1904.1), 전쟁기간중 미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하고, 포스머스 강화회담에 대표를 파견하여 참가를 시도함
- 1905.11 을사조약 체결로 외부(外部)가 폐지되었으나, 이후 고종은 헐버트 등 해외밀사를 파견하고 을사조약이 불법 무효임을 선언하는 친서를 발송하는 등 국제여론에 호소함

3. 본문 : 붙임

구한말 한반도 주변정세와 한국의 외교

목 차

1. 전통적 동아시아국제질서의 붕괴와 한국의 대외개방·수교외교 (1876-1882) ····· 1
1) 강화도조약의 체결과 대외개방정책의 추진 ····· 1
2) 서구 열강과의 수교와 근대적 외교제도의 도입 ····· 4
2. 청의 간섭 증대와 한국의 자주외교(1882-1894) ····· 8
1) 한중관계의 변천과 청의 대조선 속국화 정책 ····· 8
2) 한러간 접촉과 '균세(均勢)' 외교의 좌절 ····· 11
3) 대청 자주외교의 시도와 주미 공사의 파견 ····· 13
3. 청·일·러의 각축과 한국의 자주독립외교(1895-1910) ····· 15
1) 청·일전쟁 시기 일본의 침탈과 한국의 자주독립선언 ·· 15
2) 러일의 각축과 대한제국의 외교활동 ····· 19
3) 일본의 외교권 침탈과 고종의 국권수호외교 ····· 22

1. 전통적 동아시아국제질서의 붕괴와 한국의 대외개방·수교외교(1876-1882)

1) 강화도조약의 체결과 대외개방정책의 추진

□ 서구의 통상요구와 개항론의 등장

o 1860년대까지 조선의 지배층은 위정척사사상을 기반으로 서구 열강의 수호통상요구를 거부하고, 중화론적 국제질서관을 고수함
- 병인양요(1866), 신미양요(1871)시 서양 세력을 격퇴한 것을 계기로 서양과의 교섭 반대세력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함

o 고종을 비롯한 일부 소수 집권층은 근대 국제질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서양 국가와의 수교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됨

- 서양 이양선의 출몰, 외국인의 해적 행위 및 침략행위를 경험하면서, 국제문제에 대한 안목을 넓혀야겠다는 움직임이 대두됨
- 朴珪壽의 영향하에 개화사상이 대두되었으며, 그의 사후 역관 吳慶錫과 중인출신 의사 劉鴻基의 지도하에 김옥균·박영효·서재필 등 초기 개화파가 형성되어감

※ 1872년 청에서 귀국한 박규수가 동년 음12.26 고종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, 유럽의 보불전쟁을 이미 파악하였으며, 청국내 서양각국이 교역을 해본 결과 실질적 이득이 적어서 점차 물러날 기세인 것으로 파악함

※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역(1996),『승정원일기』고종 46, 238-239쪽

□ 한일관계의 변천과 대일수교

o 전통적으로 일본과의 교린관계하에서 쓰시마번(對馬藩)이 일본측 창구로서 양국간 교류·무역활동을 담당하였으며, 개항기 양국간 외교 교섭은 다음과 같이 전개됨

- 제1기(1868.음10-1870) : 메이지정부 수립을 통보하는 국서(서계)가 전달되자, 조선 정부는 중국 천자만이 사용하는 '황(皇)', '칙(勅)' 등의 용어를 문제삼아 서계접수를 거절함

※ 국서전달 사신 히구치(桶口鐵四郞)가 초량 왜관에 도착(음 1868.12.19) 이전에 이미 일본내에서 정한론이 대두됨

- 제2기(1869-1874):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대마도를 통한 양국간 외교채널을 폐지하고 외무성이 조선 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체제로 변경시킴

※ 일본이 다시 1870.2 부산에서 국서전달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자, 이후 사다(佐田白芽), 모리야마(森山茂) 등이 무력시위에 의한 조약 체결을 건의함

- 제3기(1874-1876 운요호 사건 발생시): 1873년 대원군의 하야와 고종의 친정이후 대일 교섭을 통해 서계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논의가 전개됨

※ 박규수는 당시 대원군과의 논쟁에서, ① 서계상의 '황', '칙'은 일본측이 사용하는 용어이며, ② 조선이 일본 외무성을 상대하지 않으면 대일 관계를 처리할 수 없으며, ③ 서양과 대치한 상황에서 일본을 적대시하는 것이 국가안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함

o 조선정부의 태도변화와 조일수호조약의 체결 경과

- 군함 6척과 300명의 병력을 대동하고 부산에 도착한 구로다 기요다카(黑田淸隆) 일행이 1876.1.15. 조선에 조약체결을 강요함

※ 당시 일본의 조선 진출에 대해 영국 등은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이를 부추김. 1874.8. 주청 영국공사 웨이드(T.F. Wade)는 오쿠보 도시미치(大久保利通)에게 일본이 타이완이 아닌 조선에 진출시, 영국 등이 지원 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함

- 이에 조선 정부는 1876.1.30 申櫶과 尹滋承 등을 대표로 임명, 일본측과 수호조약의 교섭에 착수함

※ 신헌・구로다간 회담(1876.2.11-13)에서 일본측은 서계 거부와 일본 사절의 접견 거부로 정한론이 대두되었음을 통고하면서, 10일 이내로 조선측의 회답거절시 군사행동을 취하겠다고 협박함

- 1876.2.14 어전회의에서 박규수 등 개화세력은 일본 등 외국과의 조약체결의 불가피성을 언급하였으며, 대원군의 추종세력과 김병학 등 보수층은 조약체결에 반대함

- 결국, 조선 정부는 개화파의 영향과 청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약체결을 결정한 후, 조약안의 구체적 항목을 검토함

※ 리훙장(李鴻章)은 1876.1 청에 파견된 모리 아리노리(森有禮)공사에게, "청은 조선의 내치외교에 대해 직접 간여하지 않는다"는 점을 표명하였으며, 조약체결을 권고하는 청 예부의 자문이 1876.2.7 조선에 전달됨

당시 신헌에게 하달된 조선 정부측의 조약 내용안

o 상평전의 사용 불허
o 미곡(쌀)의 교역 금지
o 교역은 물물교환만 허용
o 조선은 일본과 수교하며 타국인의 왕래 금지
o 아편 수입과 기독교의 전래 금지
o 망명을 목적으로 표류하는 자는 송환 조치함

o 1876.2.27 체결된 강화도조약은 제1조에서 "조선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"라고 규정함으로써, 국제사회에 청의 번방(藩邦)에서 벗어나 하나의 독립국가임을 천명함

※ 위 조항에서 일본이 조선을 '자주국가(自主之邦)'로 규정한 것은 종주국으로 자처하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임

- 강화도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서, 상주외교사절 파견(제2조), 영사재판권 규정(제10조) 등이 명기됨
- 개항장내 일본인의 왕래, 통상, 가옥건조 및 임차 허용(제4조), 초량항・원산・인천 등의 개항(제5조), 자유무역(제9조) 등은 이후 일본의 경제적 침탈의 토대가 됨

2) 서구 열강과의 수교와 근대적 외교제도의 도입

□ 청의 개입과 서구 열강과의 수교외교

o 19세기 후반까지 중화론 국제질서하에서 조선 정부는 '사대자소(事大字小)의 예(禮)' 명분하에 종주국인 중국에 대하여 조공국의 의례적 절차로서 조공을 바쳐옴

- 그러나 조선 정부는 청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외교와 내정에 있어서 자주성을 유지해옴

o 청의 리훙장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조선의 영중추부사 李裕元에게 서한을 보내, 서구 열강에 대한 문호개방의 필요성을 시사함

※ 조선 정부는 당시 국제법(만국공법)의 무용성을 지적하면서 서구 열강의 조선 침탈을 우려하여 수교 권고를 거절함

o 수신사 金弘集의 방일시(1880), 일본주재 청국공사관은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의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

- '親중국'·'結일본'·'聯미국'을 주장하는 황쭌센(黃遵憲)의 『조선책략』은 조선내 커다란 반향을 초래하여, 이후 조선의 대외정책 전환의 계기가 됨

※ 『조선책략』은 주일 청국공사 허위장(何如璋)의 권유로 주일 청국공사관 참찬관인 황쭌센에 의해 청의 입장에서 작성되었던 바, 당시 허위장은 조선이 근대 국제사회에 편입될 경우 청의 지배권과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했음

o 대미 수교의 적극 추진 및 한·미·중의 입장

- 신미양요이후 미국은 조선과의 조약체결을 시도하여, 미 해군성은 1878년 슈펠트(R.W. Shufeldt)제독에게 평화적 방법으로 교섭을 재개하기 위해 조선을 방문할 것을 지시함

※ 1880.5 부산에 도착한 슈펠트는 자신의 수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, 이후 일본과 청에 조선측을 설득시킬 것을 부탁함

- 조선 정부는 1881년 金允植·李容肅·魚允中을 청에 파견하여, 리훙장에게 미국과의 조약체결 희망의사와 조선측의 의견을 전달함

※ 1882.5.22 제물포에서 조미수호조약의 체결당시, 신헌·김홍집 등 조선측 대표는 미곡 수출금지 조항의 삽입을 주장하여 관철시킴

- 리훙장은 슈펠트와의 교섭에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 조항 삽입을 시도했으나, 슈펠트가 반대함

※ 1882.1.6자 미 프렐링하이즌 국무장관은 슈펠트에게 조선 연안에 난파된 선박과 선원의 구조 조약 체결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조약을 체결하라는 훈령을 내림

- 이에 따라 양측은 조약 체결후 "고종이 미 대통령에게 청국의 속방(屬邦)이라는 조회문을 발송한다"는 선에서 합의함
- 조미조약의 체결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은 자주적이어서, 청에 대한 조선의 국제적 지위가 근대적 국제질서하에서 속국, 즉 식민지가 아님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주지시킴

※ 고종이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서 "조선이 비록 중국의 속방(屬邦)이지만 이것은 명분상에 그치는 것이며, 실제로는 내정과 외교에 있어 자주권을 행사하는 국가"라고 명시함

* K.Bourne & D.C. Watt, eds., *British documents on foreign affairs,* Part I, Series E, Vol 2 (Univ. Publications of America, 1989-1994), 12-19쪽

조미수호조약의 주요 내용

o 수교후 외교 사절 및 영사 파견
o 미곡수출 금지
o 군기화약 수입의 금지
o 미국인의 거주 허용
o 商館과 선박내 도주한 조선 범인의 체포
o 영사재판권의 규정

o 국제사회의 인정 추구와 서구 열강과의 수호조약 체결

- 조영수호조약: 주청 영국공사 웨이드는 리훙장에게 조약체결의 알선을 부탁하였으며, 1882.6.6 조영조약이 체결됨. 그러나 영국은 동 조약의 관세율이 영·일 및 영·청간 조약보다 관대하다는 이유로 1년 가까이 비준을 거부함

※ 조영조약의 경우, 관세율 표를 따로 작성하였으며, 개항장에서 영국 상민은 신교의 자유를 가지며 여권 보유시 조선 내지의 자유 여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이후 영국 상품의 진출이 용이해짐

- 조독수호조약 : 1883.11.26 요코하마 독일총영사 자페(E. Zappe)와 민영목간 협상을 통해 체결됨
- 조러수호조약 : 청의 관여없이 묄렌도르프의 알선으로 체결되었으며(1884.7.7), 블라디보스톡에 외국영사를 두지 않으려는 러시아측의 요구로 인해 영사의 상호파견 규정이 제외됨
- 조불수호조약 : 조선내 천주교의 포교 문제를 둘러싼 이견(결국 인정함)으로 다른 서구 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체결되었음(1886.6)

□ 서구문물 수용론의 확산과 근대외교 전담부서의 설립

o 강화도조약체결이후에도 대다수의 지식인 계층은 일본을 서양의 앞잡이로 간주하고 일본과의 화친을 오랑캐인 서양과의 화친과 동일시하여 반대함

- 이에 고종 등 개화세력은 일본과 서양은 별개라는 '왜양분리론(倭洋分離論)'을 전개하면서, 일본을 통해 서양문명을 수용하였으며, 일본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신사를 파견함

o 고종 등 집권층은 위정척사파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서구문물을 수용하는 방안으로서, 청으로부터의 수용을 추진함

- 1880년대초 김윤식이 이끄는 조선의 기술자들이 톈진에 파견되어(영선사) 서양의 기계제조법 등을 학습하고 귀국하였으나, 당시 재정적 궁핍으로 인해 공장 건설·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함

o 고종은 기존의 예조(禮曹)로는 서양과의 관계 설정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, 1881.1 청의 '총리각국사무아문'을 모델로 하여, 외교·통상 등을 전담하는 '통리기무아문'을 신설함

- ‘통리기무아문’은 임오군란 당시 대원군에 의해 혁파되었으나, 그후 대외관계를 전담하는 ‘통리교섭사무아문’과 부국강병 추진을 전담하는 ‘통리군국사무아문’으로 재편, 분리됨

※ 청의 경우, 청조의 예부(禮部)에서 조공질서를 관할해 왔으나, 새로운 국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1861.1 총리각국사무아문(總理各國事務衙門)이 설치됨으로써 조공질서 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함

* 김용구, 『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』(나남출판, 1997), 97-99쪽

-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업무는 조약문・통상장정 및 외국과의 교섭사례 간행, 조약・장정 개정시『萬國公法』의 관련 조항 검토, 공사·영사의 위임장 발부 등임

* 『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(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)』(1887년, 1책 8장). 김수암,「1880년대 만국공법의 전파와 수용-조청관계를 중심으로」,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년도 연례학술회의, 2002, 4-5쪽

o 1882.음8.5 고종은 향후 국제법과 서양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며, 부국강병을 추진하겠다는 교서를 반포함

* 『고종실록』 고종 19년 8월 5일조

2. 청의 간섭 증대와 한국의 자주외교 (1882-1894)

1) 한중관계의 변천과 청의 대조선 속국화 정책

□ 임오군란의 사후처리와 대일 사죄사절의 활동

o 1880년대초 위정척사의 압도적 분위기하에서 일본인 군사교관을 초빙, 근대적 군대를 양성하려는 고종의 시도는 차별대우에 대한 구식군대의 반발이 군인봉기로 확대되면서 좌절됨

- 개항이후 쌀의 유출과 경제적 피폐로 민중 및 보수세력들의 배일 감정이 고조되었으며, 조선 정부의 청에 대한 구원병 요청은 청의 직접 개입을 초래하는 계기가 됨

o 야마가타(山縣有朋) 내각은 임오군란당시 일본공사관 습격을 국내 정치적 불만을 해외로 배출하는 기회로 여겨서, 군대를 대동한 하나부사(花房義質) 일본공사를 통해 사죄압력을 가함

- 조선 정부는 사태수습을 위해 1882.8.30 하나부사와 이유원·김홍집간 체결된 '제물포조약'을 통해 일본측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함

※ 제물포조약시 주요 합의 사항

· 조선의 陳謝使節 파견

· 살해된 일본인에 5만원 지급

· 일본공사관 호위 위해 일본군대의 주둔

※ 동 조약과 같이 체결된 수호조규 속약 2조에서는 일본외교관·영사의 내지여행 및 인천·원산·부산내 일본인 유보지역의 확대를 허용함

o 임오군란의 진사사절로 방일한 박영효·김옥균·서광범 등 개화파는 도쿄 주재 영·러·미·불 공사와 접촉하면서, 조선이 청의 속국이 아니라 독립국임을 설명함

- 방일중 개화파는 파크스(H. Parkes) 영국공사에게 이미 체결된 조영조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청하였으며, 로젠(R.R. Rosen) 러시아공사에게 직접 교섭에 의한 조약 체결을 제의함

□ 임오군란이후 청의 침탈 : 청군 주둔하에 외교·내정 간섭 심화

o 1880년대이후 청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한종주권의 강화를 내세워 조선을 중국 변방의 속국, 즉 근대적 의미의 식민지로 삼기 위해,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대해 간섭하기 시작함

- 1882.8.20 남양의 마산포에 상륙한 광동수사제독 우창칭(吳長慶) 휘하의 3천여명의 청군을 배경으로, 청은 8.26 청군 진영을 방문한 흥선대원군을 구금하여 톈진으로 압송함

※ 리훙장 휘하의 장젠(張謇), 덩청슈(鄧承修) 및 장페이룬(張佩綸) 등은 그동안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바꾸어, 조선을 동삼성(東三省)에 편입시키자는 병합론을 주장함

o 천수탕(陣樹棠)과 위안스카이(袁世凱) 휘하의 청군 주둔하에서 청은 마젠창(馬建常) 외교고문과 묄렌도르프(P.G. von Möllendorff) 재정고문을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크게 간섭함

- 이후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하는 집권층이 청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함에 따라, 친청파·개화파간 갈등 및 대립양상이 격화됨

o 1882.10.17 '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'의 체결로, 청은 전통적 사대 질서하에서의 명분을 내세우면서, 실질적으로는 청국 상인의 조선 진출시 배타적 이익을 보장하는 조항을 강요함

※ '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'에서는 조선을 청의 속방(屬邦)으로 간주하고 청의 배타적 경제적 이득을 보장하며, 조선 국왕의 위상을 북양대신(北洋大臣)과 동격으로 격하시킴

* 『고종실록』, 고종 19년 10월 17일조

□ 개화파의 외교활동과 갑신정변의 시도 : 청한종주권의 부정

o 일본을 근대화의 모델국가로 상정한 개화파는 청의 속국화 정책에 반발, 친청 세력을 제거하고 자주적 근대국가를 형성하려는 시도하에 1884.12.4 갑신정변을 단행함

- 갑신정변 혁신정강 제1조에서 "청국에 대한 조공·허례의식을 폐지하고, 대원군의 조속한 환국"을 공포함으로써, 조·청간 종속관계를 부정·극복하려는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함

- 임오군란이후 일본의 이노우에 가오루(井上 馨) 외상은 청과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 조선에 대한 불간섭 정책을 추진하면서, 1883.7 김옥균의 300만원 차관 요청을 거절함
  ※ 이후 김옥균이 근대화에 필요한 경비 조달을 위해 빙험(J.A. Bingham) 주일 미국공사의 소개로 요코하마거주 미국인 사업가에게 차관 교섭에 나섰으나, 일본의 방해로 실패함
- 조선에 귀임(1884.10.20)한 다케조에(竹添進一郎)공사는 개화파의 정변 지원의사를 표명하였으나, 정변당시 청군과 접전중 일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정변좌절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함

o 갑신정변의 사후처리를 위해, 1884.12.30 조선에 도착한 이노우에 외상은 오히려 갑신정변의 책임을 조선측에, 그리고 청일양국군의 충돌 책임을 청국에 전가함
- 한일간 체결된 한성조약(1885.1.9)에서 조선은 국사를 일본에 파견하여 사죄하고, 일본인 사망자에 대해 보상하며 공사관 습격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하기로 합의함
- 텐진조약(1884.4.18)에서 3개월이내에 조선에서 청일 양국군을 철수하며, 장차 조선에 일국 또는 양국 출병시 상호 통보하기로 함으로써, 이후 유사시 양국군대의 파병이 가능해짐

2) 한러간 접촉과 '균세(均勢)' 외교의 좌절

□ 한러간 밀약의 시도와 반러시아진영의 간섭

o 갑신정변 이후 청의 간섭과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, 조선정부는 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의 힘을 활용하는, 일종의 세력균형, 즉 '균세'의 전략하에 대러 접근을 시도함
  ※ '균세(均勢)'는 19세기에 들어와 구미중심의 근대적 국제질서를 지탱하는 운영원리로서 '세력균형'(Balance of Power)'을 의미함
  · 당시 국제정치의 세력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, 한국이 자주독립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, 특정 국가의 힘에 의존하거나 지원·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한국외교의 주요 전략이 됨

- 1884년 음11월초 權東壽와 金鏞元 등이 블라디보스톡에 파견되어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하는 국서를 전달하면서, 조・러 육로통상장정의 체결 희망 의사를 전달함
- 갑신정변 직후 일본에 파견된 묄렌도르프는 1884.12 도쿄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에게 러시아의 조선 보호와 군함 및 수병 파견을 요청함(한러 밀약사건)

  ※ 1884.12.30 한성에 도착한 러시아 서기관 슈페이에르(Alexis de Speyer)에게 고종은 러시아와의 우호 희망 의사를 전달하였으며, 묄렌도르프는 그 대가로 영흥만의 조차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짐

  * 최동희, 『조선의 외교정책』(집문당, 2004), 284-286쪽

o 러・청・일의 반응과 청의 '고종 폐위' 구상
- 당시 러 기에르스 외상은 조선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주저하여, 조선의 보호 요청에 소극적 반응을 보였으며, 1886.10 청・러간 텐진신사협정 체결로 러시아의 조선 진출이 저지됨
-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 일본은 청의 적극적 조선 진출을 희망하였으며, 청국 정부와 리훙장 막료 사이에 조선병합론 등이 대두됨
- 1885. 8. 총리내무부사 심순택이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하는 국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내세워, 청은 고종 폐위를 구상하였으나, 러시아의 무반응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음
- 위 권동수・김용원 밀사사건을 빌미로 이노우에 외상은 대러 접근에 관여한 고종의 실각과 묄렌도르프의 퇴거를 요구하는 '조선 공동보장 8개항'을 청에 제의하였으나, 거부당함

□ 영국의 거문도 점령과 주변 열강의 방관

o 전세계적 차원에서 러시아와 대립해온 영국은 러시아가 거문도나 조선내 다른 지역 점령계획을 사전 봉쇄한다는 명분하에 조선 정부에 사전 통고없이 거문도를 점령함(1885.음3.1)

- 19세기 중반이후 영 해군성은 러 함대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거문도의 군사적 가치에 주목해왔으며, 청 역시 러의 조선 진출 억제 측면에서 거문도 점령을 반대하지 않았음
- 북경주재 영국 임시대리공사 오코너(Nicholas R. O′coner)의 외교문서가 1885.3.10 도착함으로써 조선 정부는 거문도 점령 사실을 파악함

o 조선 정부는 청의 함대를 이용하여 거문도 현지를 직접 확인한 후에, 나가사끼(長崎)에 가서 영국 해군제독에게 공식 항의 하였으며, 이후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면서 철수를 요청함

※ 조선 정부는 1885.음4.3 청 군함을 이용하여 엄세영(嚴世永)과 묄렌도르프를 거문도에 파견, 사실을 확인하도록 함

- 조영간 교섭에서 조선측은 영국의 거문도 철수를 요청하자, 영국은 조선이 각국 공관에 거문도 점거에 대한 조회문을 보낸 사실에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형식적으로 회답함

※ 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 김윤식이 1885.음4.7 각국 공사들에게 거문도 점령사건에 대한 조회문을 발송하였으며, 음5.22(1885.7.4) 영국영사 애스턴이 방한함으로써 조영간 외교적 교섭이 전개됨

- 영국은 2년여의 거문도 점령후 러시아가 원산과 그외 부동항을 점령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고 나서야 1887.3.1(음2.7)자로 거문도에서의 철수의사를 조선에 통고함

* 최동희, 위의 책, 284-297쪽

3) 대청 자주외교의 시도와 주미 공사의 파견

□ 고종의 대청 자주외교와 주미 공사의 파견

o 조선의 대러 접근이 실패한 후, 고종은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국제사회에 인정받기 위해 미국 등에 상주외교사절을 파견함

- 고종은 1887.8.18 朴定陽을 미국주재 전권대신에 임명하였으며, 청의 반발에 직면하자 위안 스카이에게 파견중지를 통보하면서 한밤중에 박정양을 인천을 통해 미국으로 출발시킴

※ 박정양에 앞서 1887년 주미공사에 임명된 병조정랑(兵曹正郞) 金思轍은 외국어에 능통치 못하고 외교실무에 익숙하지 않으며 국제법서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이 외국에 파견된다면 오히려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면서 임명 사직 상소문을 올림

* 『고종시대사』 5 고종 25년 8월 21일조

o 리훙장은 박정양 초대 주미공사가 미국에 도착한 후 의전절차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제약을 가함으로써 조선의 자주외교를 제한하고자 하였으나, 박정양은 이에 따르지 않음

※ 리훙장이 제시한 '영약삼단'(另約三端)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

① 조선공사는 도임후 청국공사를 방문, 청국공사와 함께 주재국의 외무성을 방문해야 함

② 의식・연회 등이 있을 때는 청국공사의 뒤를 따라야 함

③ 중대한 교섭안건은 청국공사와 의논해야 한다는 것 등임

- 조선의 사절이 위 '영약삼단'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이 반발하자, 조선 정부는 "조선의 내치외교는 자주"라는 전통적 사대자소의 원리를 들어 청의 횡포를 반박함

□ 조선의 중립국화 구상과 청의 종주권 주장 반박

o 거문도점령사건이후 개화파는 조선에서 청의 압도적 위세와 일본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조선의 중립화를 주창함으로써 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자주독립의 실리를 취하고자 함

- 유길준은 1888-89년 저술한 「국권」에서 조선이 중립국이 될 경우 국제법상 독립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파악함

- 김옥균도 「이홍장에게 보내는 편지」(1886)에서 한중관계를 "입술과 이의 관계"로 전제하고 청국을 맹주로 한 조선의 중립국화를 주장함

*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9, 『金玉均全集』, 152쪽

o 유길준은 조선이 전통적 사대질서하에서 청에 조공을 바치는 국가(증공국)가 될지언정, 근대 국제관계에서의 속국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조선의 자주적 위상을 증명함

- 유길준은 당시 조선에 전래된 근대국제법 지식을 원용하여, 증공국(조선 지칭)은 (미국 등) 다른 독립주권국가와 동등한 수호조약을 체결할 권리 및 사절파견 권리가 있음을 밝힘

  * 『유길준전서 1』, 89-99쪽; 정용화,「전환기 자주외교의 개념과 조건 : 19세기말 대청외교의 이론적 검토」『국제정치논총』43집 2호(2003)

3. 청 · 일 · 러의 각축과 한국의 자주독립외교 (1895-1910)

1) 청 · 일전쟁 시기 일본의 침탈과 한국의 자주독립선언

□ 청 · 한 종주권 부정과 청 · 일군의 철수 요구

o 1894.2. 동학농민군 봉기로 위기에 처한 조선 정부가 청에 구원병을 요청하자(1894.6.2),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하였으며 일본은 텐진조약상 공동출병 조항을 명분으로 출병함

- 이후 조선 정부는 1894.6.11 동학농민군과 전주화약을 성립하여 농민군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였으며, 청 · 일군의 철수를 요구함

- 일본측이 개전구실을 확보하기 위해 청한종주권 단절을 강요하자, 조선 정부는 처음부터 자주국으로서 내정과 외교에서 독립되었다고 밝힘으로써 일본의 간섭을 배제코자 노력함

  ※ 1894.6.26 오토리 게이스케(大鳥圭介) 주한일본 공사가 고종을 알현한 자리에서, 고종은 일본군의 출병으로 민심이 안정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우선 일본군의 신속한 철수를 요청함

  * 『일본외교문서』 27권 1책, 561-567쪽 문서번호 378; 國史編纂委員會 編譯,『駐韓日本公使館記錄』(시사문화사, 1988) 4권, 207쪽

o 청・일군의 조속한 철수를 위해, 조선 정부는 李承壽 주미공사를 통해 1894.6.22 및 7.5 그레샴 국무장관에게, 그리고 1894.6.24 서울주재 미・영・러・불・독 5개국 공사들에게 중재를 요청함

* 이보형, "청일개전 직전의 미국의 거중조정과 한국", 『한미수교 100년사』, 국제역사학회 한국위원회, 1982, 94-95쪽

o 1894년 7월하순 청일양국간 개전이 임박하면서, 주한일본공사관은 일본군에 대한 군수 지원・협조를 조선 정부에 요청하였으나, 조선 지방관리와 일반 민중들이 이를 거절함

- 주한일본공사관은 일본군을 동원, 서울 근교의 주요 도로에서 우마(牛馬)를 강제 차출하여 군용으로 충당함

* 『일본외교문서』, 27권 1책, 666-670쪽, 문서번호 448-450; 『주한일본공사관기록』4권, 247-250쪽

o 1894.7.23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조선군의 무장해제를 강행하고 사실상 고종을 감금하는 상황에 이르자, 대원군은 청국에 구원병을 요청하는 친서를 작성함

- 同 친서(1894.7.28자)는 1894.10 일본군이 평양성 점령후 탈취한 전리품에서 발견・압수됨으로써, 이후 이노우에 가오루 공사가 대원군의 하야 압력을 가하는 근거로 작용함

* 『주한일본공사관기록』5권, 80-89쪽

o 1894.8.17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화하기로 확정한 후, 한반도내 전투의 원활한 수행과 참전 명분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약 체결을 강제함

- 일본의 대청 선전포고이후 1894.8.20 '조일잠정합동조관(朝日暫定合同條款)'에서 일본의 내정간섭의 명분이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됨

- 1894.8.26에 체결된 '조일동맹조약'에서는 조선 정부가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일본군의 전쟁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기됨

* 『고종실록』, 고종 31년 7월 20일과 22일조

□ 갑오개혁시기 외교제도의 개편과 대청 독립선언

o 외교 관련 부서는 좀더 근대 외교를 수행하는 형태로 직제 개편되었으며, 『만국공법』 등을 참조하여 서구 근대국제법 및 대외실무에 관한 지식을 파악함

- 1894.6.28 군국기무처의 결정에 의해, 이후 외무아문(外務衙門)에서 교섭·통상사무와 공사·영사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됨

  ※ 그중 참의(參議) 1명, 주사(主事) 4명으로 구성되는 '교섭국(交涉局)'에서 각국의 공법 및 사법을 참조하여 외교 사무를 담당하게 됨

  *『고종실록』 고종 31년 6월 28일조

- 1895.3.25 칙령 제42호로 '외부(外部) 관제'가 반포되어, 산하에 외교사무를 담당하는 교섭국(交涉局)과 통상·항해사무를 담당하는 통상국(通商局)의 2국을 두기로 함

  ※ 1895.3.25 칙령 제43호로 "외교관 및 영사관 관제"가 반포되어, 외교관 관제가 "특명전권공사, 변리공사, 대리공사, 공사관의 1·2·3등 참사관"으로, 영사관 관제는 "총영사, 영사, 부영사"로 구분됨

  *『고종실록』, 고종 32년 3월 25일조

o 개화파 관료는 외무아문을 신설하고 자주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등 조선의 외교적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

- 1894.6.28 군국기무처에서 국내외 공사 문서에 개국기원을 사용하며, 그동안 청의 방해로 중단된 영·독·불·이·러 등에 특명전권공사를 파견할 것을 제의하여, 고종의 윤허를 받음

  *『고종실록』, 고종 31년 6월 28일조

- 1894.11.21 조선 정부는 칙령 3호를 통해 향후 조선 국왕이 직접 외교사절을 접수하고 대외적 신임장을 제정함을 공포함

- 청한통상장정 등 기존의 불평등 협정을 폐기하며, '보호통상 규칙'을 제정·반포하여 그동안 청국의 특권을 폐지함

  *『고종실록』, 고종 31년 11월 21일조;『주한일본공사관기록』 4권, 247쪽

- 1894.12.12 종묘에서 고종이 직접 공포한 홍범(洪範) 14개 조항에서 청·한 종속관계의 종식을 공식 선언함

  * 『고종실록』, 고종 31년 12월 12일조

  ※ 1895.3.23 청일간 강화조약(下關講和條約)의 제1조에서 "청국은 조선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가라는 점을 인정하며, 그전에 청국에 공납을 바치던 규정 등은 앞으로 모두 폐지한다"라고 명기됨으로써 조선의 대청 자주독립이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됨

o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 침탈을 위해 주미 한국공사관의 철폐를 시도하자, 고종은 씰(J.M.B. Sill) 주한 미국공사에게 이러한 음모를 통보하고 미국의 개입여부를 문의함

- 1895.1.8 스기무라 후카시(杉村濬) 서기관은 조선의 외부(外部)를 방문, 주미한국공사의 업무를 주미 일본공사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워싱턴주재 한국공사의 소환을 주장함

  ※ 그 후 일본공사관은 주미공사관 폐쇄에 대한 미국측의 비판을 우려하여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함

  * *Korean-American Relations,* Volume II, 259쪽, No. 78, John M. B. Sill to Secretary of State, Jan. 4, 1895; Telegram, Sill to Gresham, Jan. 9, 1895; 최문형 외, 『명성황후 시해사건』(민음사, 1992), 290-291쪽

o 조선의 개화파는 홍범 14개조의 공포이후 명실상부한 자주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역량의 강화와 국내정치개혁을 시도하였으나, 주한일본공사관의 개입에 의해 견제 및 좌절됨

  ※ 1894.12.17 김홍집 내각하에서 박영효 등 해외 귀국 개화파와 김윤식, 유길준 등 국내개화파에 의해 추진된 개혁정책들이 정부 각부서내 일본인 고문관들의 간섭 등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

  * 『일본외교문서』 28권 1책, 426-427쪽, 문서번호 282, 1895.5.22; 439-440쪽, 문서번호 296, 1895.5.30; 『주한일본공사관기록』, 제3권, 323쪽

o 당시 박영효 내무대신은 일본상인들의 조차지 요구를 거절하였으며, 명성황후와 러시아공사관간 접촉을 경계함

- 박영효의 급진적 개혁활동은 웨베르 주한 러시아공사의 반발과 주한일본공사관의 견제를 받았으며, 결국 1895.7 궁궐 근위병의 교체 시도가 역모로 몰려 실각됨

  * 『주한일본공사관기록』6권, 198쪽, 1895.7.12 ;『일본외교문서』, 27권 1책, 668-670쪽, 문서번호 450, 1894.9.21

2) 러일의 각축과 대한제국의 외교활동

□ 아관파천과 반일·친러정책의 전개

o 청일전쟁이후 고종은 러시아 등을 끌어들여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왕실의 주변인물을 주한 러시아공사관 등에 파견하는 등 주변 열강의 협력을 요청함

- 러시아가 주동이 된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감소되자, 1895.7 명성황후는 친러파 내각을 출범시켰으며 그동안 일본인이 훈련시킨 훈련대의 해산을 시도함
- 이에 반발한 일본은 미우라 고로(三浦悟樓) 주한공사가 주도하여 1895.10.7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자행함으로써 친러파 내각이 붕괴됨

o 1896.1부터 조선은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하고 주한 러시아공사들은 조선에 군대 파견을 요청하였으나, 러시아 정부는 일본과의 충돌을 우려하여 군대파견을 승인하지 않음

- 1896.2.2. 고종은 李範晉을 통해 러시아공사관으로의 이어(移御) 의사를 전달하였으며, 2.11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 약 1년간 체류함(아관파천, 1886.2.11-1897.2.20)

o 러시아 니콜라스 II세 대관식(1896.5.26)에 참석한 閔泳煥은 1896.6.13. 로바노프 외상에게 각서를 전달하면서 고종 환궁 후에도 러시아 군대의 호위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함

당시 민영환이 전달한 조선 정부측의 요청사항

o 한국군대의 창설시까지 러시아군에 의한 국왕(고종)의 호위
o 군사와 경찰의 훈련을 위해 다수의 교관 파견
o 내각과 산업 및 철도 분야를 지도할 고문 파견
o 3백만원의 차관 제공
o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전신선 설치

* 이민원,『명성황후시해와 아관파천』(국학자료원, 2002), 160-161쪽

o 한국의 계속된 요청에 대해 러시아측은 고종이 러시아 공관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러시아 군대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구체적 개입을 회피함

- 1896.8.7 민영환이 로바노프 외상에게 조러간 동맹을 제의하였으나, 러시아측은 일반적 약속만 언급함
- 로청은행 관계자가 1896.8 서울에 도착한 이후 러시아의 차관 공여 시도는 조선세관의 총세무사 브라운의 반대로 좌절됨

※ 러시아의 육군대령 푸타타 일행이 1896.10.20 인천에 도착하여 조선 군대를 훈련시키려고 하였으나, 일본의 반대로 좌절됨

o 아관파천기간동안 러시아가 고종의 신변보호 댓가로 광산채굴권, 벌목권 등 조선내 이권을 강탈해가자, 독립협회 등은 러시아 등 열강의 이권침탈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함

- 1897년 러시아가 재정고문 알렉시에프(Kerr Alexieff) 및 군사교관을 파견하고 한러은행의 설립을 추진하자, 독립협회 회원들은 반대 상소를 올렸으며,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이권침탈에 반대함

*『독립신문』 제23호; 『고종실록』, 광무 2년 3월 18일조

□ 한반도 중립화 제의와 대유럽 상주외교사절의 파견

o 한국의 외부가 일본의 감시 내지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, 고종은 한국의 외교를 주관하여, 외국어에 능통한 측근을 통해 직접 외국사절과 접촉하거나, 주한외국인을 특사로 파견함

- 1897년 대한제국 선포이후 고종은 중립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여, 1899년 봄 알렌(H.N. Allen) 미국공사에게 미국 주도하에 열강에 의한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함
- 1899.10 궁내부 고문으로 초빙된 주한미국공사관 서기관 샌즈는 한국을 영세중립국화하고, 열강의 보장을 위해 평화조약 또는 국제협약을 체결한다는 '한국중립화안'을 제기함
- 고종은 1900.8.7 조병식을 특명전권대사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, 8.29 아오키 슈조(青木周藏) 외상에게 한국을 중립화하는데 동의할 것을 요청함

  ※ 당시 아오키 외상은 한국이 스위스등과 같이 중립을 유지할 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립화 제의를 거절함. 당시 파블로프 주한러시아공사도 한국의 중립화안에 반대를 표명함

  * 현광호, 『대한제국의 대외정책』(신서원, 2002), 81-84쪽

o 한국의 중립화 제안을 일·러가 수용하지 않자, 고종은 주요 유럽국가와의 직접 교섭을 통해 중립화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 획득을 시도함

- 1897년 러일간 한반도 분할설이 유포되자, 고종은 민영환을 프랑스에 특명전권공사로 파견하여 한국독립에 관한 비밀협정 체결을 지시하는 등 프랑스를 대유럽외교의 창구로 함

  ※ 크레마지(Crémazy) 법부고문은 중립화에 대한 국제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으며, 마르텔(Martel) 프랑스어학교 교사는 한국정부의 주요 외교교섭에 참여함

  * 현광호, 위의 책, 85-87쪽

o 1900년대초 고종은 러일전쟁 발발에 대비하며 유럽열강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중립화 및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, 그동안 부임하지 못한 구미 국가에 특명전권공사를 파견함

※ 1901.3 이범진 주러공사, 閔泳瓚 주불공사, 閔哲勳 주독・오스트리아, 閔泳敦 주영・이태리공사들이 임명됨으로써, 러・불・독・영에 상주 공관을 두게 됨

o 한국은 만국평화회의, 적십자회의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, 전쟁 발발시 적십자를 활용하여 한국의 중립화를 인정받거나 또는 제3국에 의해 중립화 보장을 추구함

- 1901.3 한・벨기에수호통상조약의 체결후, 고종은 1901.5 벨기에 전권대신에게 한국이 헤이그평화회의에 참석하게끔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
- 고종은 1903.7 내한한 벨기에인 델크와느(Adhémar Delcoigne)를 내부고문에 고빙하여 중립정책을 담당케함
- 이후 고종은 민영찬을 만국평화회의 총재에 파견, 적십자회 가입과 만국평화회의 개최시 사절단 파견을 타진함.

※ 민영찬은 1902.12.25 스위스대통령에게 적십자회 가입 국서를 봉정하고, 1903.1.8 가입허가를 받음

* 현광호, 위의 책, 87-95쪽

3) 일본의 외교권 침탈과 고종의 국권수호외교

□ 러일전쟁시기 일본의 침탈 저항과 을사조약의 무효주장

o 러일전쟁이 임박한 1904.1 고종은 일본의 동맹조약 강박을 견제하기 위해 밀사를 중국 지부(芝罘)에 파견, 전쟁발발시 국외중립을 지킬 것을 외부대신 명의로 선언토록 함

※ 위 중립선언문은 프랑스어 교사 마르텔과 벨기에인 고문의 협조를 얻어 작성되었으며, 당시 대한제국의 명예영사를 겸하고 있던 지부 주재 프랑스 영사의 협조로 위 선언문이 열강에 전달됨

- 이후 일부 열강은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여, 1904.1.21-29 영・독・프・이태리 공사는 훈령에 따라 지지 회답을 보냄
  * 서울대 교육연구소, 『고종황제의 주권수호 외교』(서울대 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고, 1994), 5쪽
-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국외중립선언을 무시하고 2개 사단을 한반도에 진주시켜 러일전쟁을 도발하였으며, 1904.2.23 한일 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일본군의 국내주둔 명분을 확보함

o 러일전쟁기간중 일본이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, 고종은 1904년 겨울 趙民熙 주미공사를 통해 미국에 제3국의 침략시 협조여부를 문의함
- 고종은 파블로프 전 러시아공사와 상해주재 무관 데시모 장군을 통해 러시아 황제의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1905.3 밀송함
- 포스머스 강화회담에 한국 대표를 파견하기 위해, 고종은 1905년 여름 이승만을 미국에 밀파하였으나, 특명전권 자격을 위임받지 못한 점을 이유로 회담참가가 거절당함
  * 서울대 교육연구소, 『고종황제의 주권수호 외교』(서울대 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고, 1994), 6-7쪽

o 1905.11 을사조약의 체결로 외교권을 빼앗긴 한국의 외부(外部)는 폐지되고, 의정부에 외사국을 두어 대외 교섭통상사무의 각종 조약서・공문서를 보존하는 사무를 담당하게 됨
- 이에 주한 각국공사관은 철수하게 되고, 재외 한국공사들의 사무는 일본 공사에게 인계됨
  * 이창훈, 「러일전쟁후 동북아신질서의 형성과 한국의 대응」,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, 『한국외교사 II』(집문당, 1995), 100-101쪽

o 이후 고종은 을사조약(늑약) 체결이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알림으로써 각국의 지지를 얻어 조약을 파기코자 시도함

- 1905.11 헐버트(H. Hulbert)를, 1905.12 주불한국공사 민영찬을 워싱턴에 파견하여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
  ※ 고종은 헐버트와 민영찬의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, 중국 지푸를 경유하여 을사조약 무효 선언 전문을 헐버트에게 타진하여 미 정부에 전달되도록 하였으나, 이미 가쓰라·태프트밀약을 체결한 미국은 한국의 요청을 외면함
- 위 대미 교섭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, 고종은 1905.11 알렌에게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여 일본의 주권 침해 사태를 고발하도록 밀지를 하달함
  ※ 그러나 알렌은 비밀외교의 실패시, 자신의 책임 감당을 염려하여 1906.2 고종의 밀지 봉행을 중단함으로써 대미 교섭이 좌절됨

□ 해외 밀사의 파견과 국제여론에의 호소

o 1906.1 이용익·이학균·현상건 등 상해 밀사의 주선으로 입국한 영국 『트리뷴』지 스토리(Douglus Story) 기자에게 을사조약의 무효 및 통감설치 반대 등을 알린 국서를 전달함
- 고종이 1906.1.29 작성한 위 국서는 스토리 기자를 통해 북경 주재 영국공사에 전달되었으며, 고종이 을사조약체결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1907.1.13 외신보도를 통해 알려짐
  * 서울대 교육연구소, 앞의 책, 7-9쪽

o 고종은 1906.6.22자 "을사늑약 무효 선언 친서"를 한국과 수교한 9개국에게 보내서 을사조약이 불법·무효임을 선언하였으며, 헐버트를 '특별위원'으로 임명하여 외교교섭 전권을 위임함
  ※ 한국의 외부(外部)는 1904년말 일본인 고문에 의해 철저한 통제를 받았으며, 1905.4 전보사(電報司) 마저 장악되어 국제통신이 통제됨으로써, 정상 외교경로를 통한 외교문서 발송이 불가능해짐
-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을사조약 체결 사실이 서구 학계에 알려졌으며, 프랑스 국제법학자 레이(F.Ray)는 1906년초 "조선의 국제법적 지위"라는 논문을 국제공법 학술지에 기고함

※ 위 논문(Francis Ray, "La Situation Internationale de la Coree", *Revue General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*, Tome XIII, 1906, pp.40-58)에서 을사조약 체결당시 강박(强迫)이 사용된 점과 고종이 그것이 불법 무효인 점을 밝히기 위해 즉각 항의외교를 벌인 점을 들어, 레이는 '1905년 조약(을사조약)이 무효'라고 밝힘

* 서울대 교육연구소, 앞의 책, 5-12쪽

o 1907.6 헤이그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은 이상설·이준·이위종 등 밀사를 파견, 을사조약이 불법적임을 천명하고 한국의 주권이 회복되도록 열강의 협조 요청을 시도함

※ 헤이그 파견 밀사들이 고종의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며 회의참가를 요구하였으나, 주최국 네덜란드 정부는 외교권이 없는 한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일본공사의 소개없이는 한국대표를 회의장에 입장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회의 참가를 저지함

o 일본은 헤이그 밀사사건을 구실로 삼아 1907.7.18 고종을 강제 양위케 하고, 곧이어 정미7조약(7.24)을 체결하여 한국의 행정권과 입법권을 박탈해감

- 고종의 양위 이후 사실상 정부차원의 국권수호 외교는 크게 제약되고, 이후 일본은 1910.8.29 한일병합 조약을 강제 체결함으로써, 한국의 국권이 완전히 침탈됨

* 이창훈, 앞의 논문, 101-102쪽